

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64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, 군수,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존치의의가 없는 조례로서 폐지코자 하는 것임.

주요골자

- 이 조례는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가격등의 표시에 관한여 과태료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'95. 8. 11일 제정되었으나 '99. 1. 15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시·군에 위임되었으므로 동조례 폐지

첨 부

-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부.

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